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
(한국)

1. 다음은 부속서 6-나의 제 7 항에 따른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한국은 다음의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일시 체류와 관련하여 미양허를 유지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아래에 명시된 범주별 사증에 대한 필요한 사증 요건 및 입국과 일시 체류에 부가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을 제외한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한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다음의 약속의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 입국과 체류가 자연인에게 허용된다. 다만, 그 자연인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서류와 자격을 제시한다.
5. 투명성을 목적으로,
 - 가.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여 한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나.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	--------------------------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가. 기업 내 전근자</p> <p>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¹ 또는 지정된 계열사²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조건 열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p> <p>1)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인.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p> <p>2)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p>	<p>가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 기간의갱신이 가능하다.</p>

¹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한다.

²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의 하나, 또는 파트너십, 기업 또는 다른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의 각각의 총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투자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된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인.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p> <p>3)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인</p>	
<p>나. 상용 방문자</p> <p>서비스 공급자가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으며, 한국 영역에 소재하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p>	<p>나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의 기간으로 제한된다.</p>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자연인	
<p>다. 계약 서비스 공급자</p> <p>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관여하는 자연인으로서 조건 열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p> <p>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허가 신청 직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p> <p>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계약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p>다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된다.</p> <p>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 및 위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와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적 그리고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p> <p>자연인이 고용된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한다.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p> <p>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요구된다.</p>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의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와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p>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p>자연인은 수적 상한, 수적 제한 및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